친환경축산팀

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안 호	행)3721 일)220-3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자원화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3년 94%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가축분뇨자원화율	94	89	90	92	2014. 2	전체 가축분뇨발생량 대비 자원화물량(%)

4. 지원조건 및 사업비지원 한도액

□ 지원조건

사 업 명	축발기금 보 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비 고
○ 개별시설	20	20	60	-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 액비저장조시설	20	50	-	30	
○ 액비살포비	50	50	-	-	

※ 융 자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 3% (민간기업 등 4%)

□ 사업비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 공동자원화시설						
	- 액 비 화	3,000				
	- 퇴 비 화	4,500				
	- 에너지화	7,000				
○ 액비저장조설치		17 (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5. 2013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개소)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5,145,000	1,503,000	209,000	1,501,000	1,575,000	357,000
◦ 개별처리 시설	61	1,875,000	375,000		375,000	1,125,000	
◦ 공동자원화시설	1	1,500,000	600,000	90,000	360,000	450,000	
◦ 액 비 저 장 조	70	1,190,000	238,000	119,000	476,000	0	357,000
◦ 액비살포비(ha)	2,900	580,000	290,000		290,000		

※ 시군별 사업내역 : 별첨

6. 행정사항

○ '11년부터 액비저장조지원 대상농가는 별도(저장조전용)의 계량(적산전력계)시설 부착

○ 액비의 반입량 및 반출량 기록부 작성 관리지도

○ 액비살포는 경종농가와 협의 부숙도판정, 성분분석, 시비처방서에 의거 농가살포

※ 환경부서 및 농업기술센타와 유기적인 협조로 악취발생, 미숙성 액비 및 함량미달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유통 지도강화

<보고사항>

○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2013. 2.20일한

○ 사업 추진 완료·정산보고 : 2013. 12.20일한(시설사업은 사진첨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13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시군별 사업 내역

□ 개별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100%)	국 비 (20%)	시군비 (20%)	융 자 (60%)	
계	**61**	**1,875,000**	**375,000**	**375,000**	**1,125,000**	
청주시	-	-	-	-	-	
충주시	6	162,000	32,400	32,400	97,200	
제천시	7	180,000	36,000	36,000	108,000	
청원군	14	570,600	114,120	114,120	342,360	
보은군	4	121,200	24,240	24,240	72,720	
옥천군	10	300,000	60,000	60,000	180,000	
영동군	1	36,000	7,200	7,200	21,600	
증평군	2	40,000	8,000	8,000	24,000	
진천군	12	336,600	67,320	67,320	201,960	
괴산군	3	80,000	16,000	16,000	48,000	
음성군	2	48,600	9,720	9,720	29,160	
단양군	-	-	-	-	-	

시군별 사업 내역

□ 공동자원화시설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100%)	국 비 (40%)	도 비 (6%)	시군비 (24%)	기 타 (30%)	
계	**1**	**1,500,000**	**600,000**	**90,000**	**360,000**	**450,0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1	1,500,000	600,000	90,000	360,000	450,000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시군별 사업 내역

□ 액비저장조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100%)	국 비 (2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30%)	
계	**70기**	1,190,000	238,000	119,000	476,000	357,000	
청주시	-	-	-	-	-	-	
충주시	6	102,000	20,400	10,200	40,800	30,600	
제천시	-						
청원군	24	408,000	81,600	40,800	163,200	122,400	
보은군	2	34,000	6,800	3,400	13,600	10,200	
옥천군	3	51,000	10,200	5,100	20,400	15,300	
영동군	2	34,000	6,800	3,400	13,600	10,200	
증평군	-	-	-	-	-	-	
진천군	24	408,000	81,600	40,800	163,200	122,400	
괴산군	8	136,000	27,200	13,600	54,400	40,800	
음성군	1	17,000	3,400	1,700	6,800	5,100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 내역

□ 액비살포비

구분	사업량 (ha)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100%)	국 비 (50%)	도 비	시군비 (50%)	자 담	
계	**2,900**	**580,000**	**290,000**		**290,000**		
청주시	-	-	-		-		
충주시	450	90,000	45,000		45,000		
제천시	350	70,000	35,000		35,000		
청원군	870	174,000	87,000		87,000		
보은군	110	22,000	11,000		11,000		
옥천군	130	26,000	13,000		13,000		
영동군	-	-	-		-		
증평군	30	6,000	3,000		3,000		
진천군	380	76,000	38,000		38,000		
괴산군	400	80,000	40,000		40,000		
음성군	180	36,000	18,000		18,000		
단양군	-	-	-		-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세부지침

□ 목 적

○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 경종·축산,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시장·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농경지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지역농축협 민간기업,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생산·유통경영체)

○ 전문유통주체가 유통협의체 관내·외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액비를 살포(경운 포함)한 경우 살포비 지원

○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주체는 최소 처리능력이 10천톤/년 이상

- 시장·군수는 참여농가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규모 조정 가능

○ 가축분뇨의 품질안전성을 위하여 살포시 시비처방서 발급 활성화

□ 사업추진 체계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기본계획 하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

※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유통주체 선정, 액비살포비 지원·관리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요건을 갖추고 유통주체 지정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를 신청한 유통주체중 액비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유통주체를 선정(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 유통주체의 살포물량 및 처리능력 등에 따라 복수선정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액비살포시 농작물 생산성에 대한 상호간 협약이 명확한 경우

○ 전문유통주체의 전문성 및 지속성이 확보된 경우

- 참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대한 지도, 시설관리능력이 있고 추가적인 수요처 확보 능력이 있으며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내 경종·축산농가가 보유한 액비저장조를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의 살포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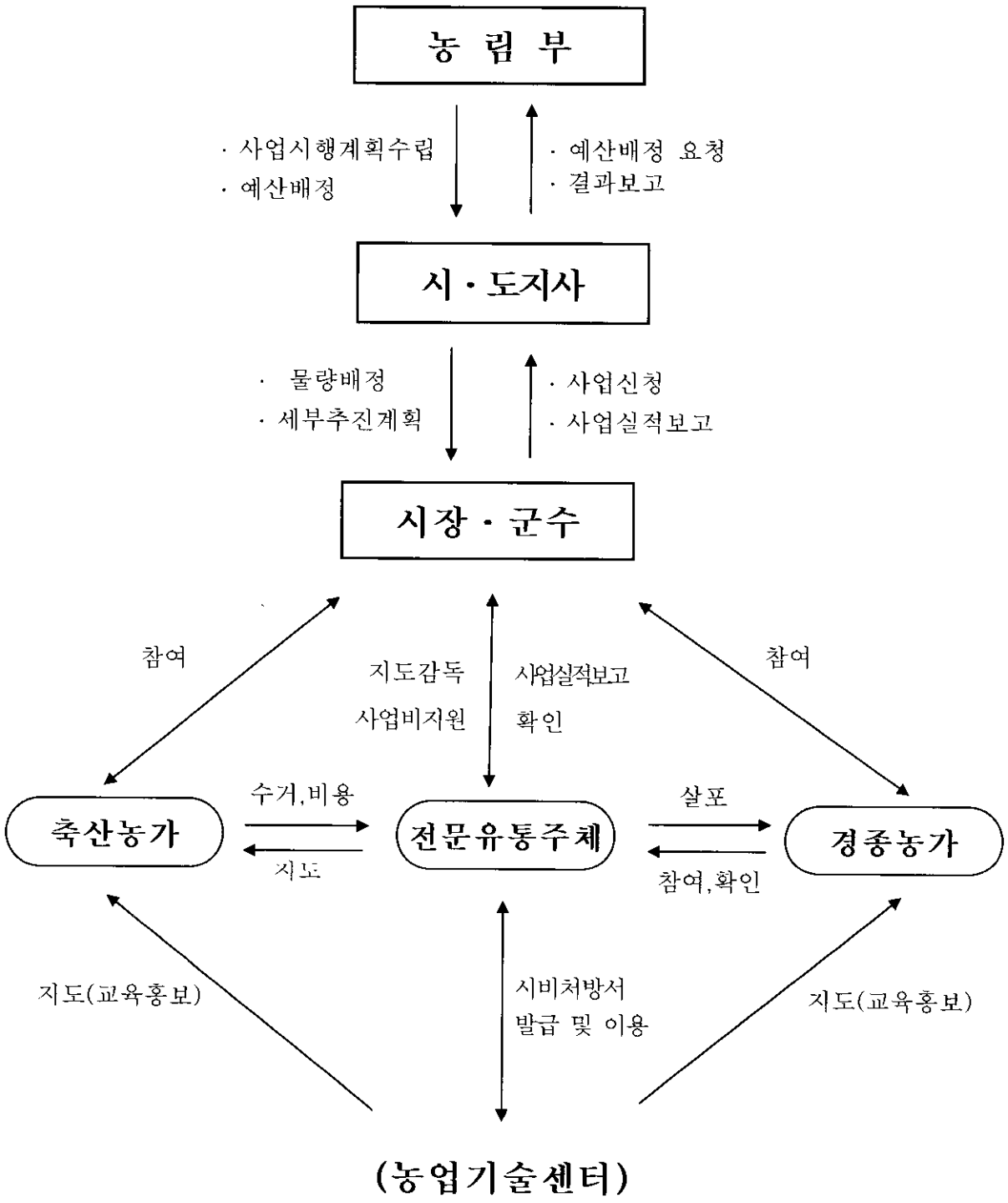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유통주체 선정결과 및 살포능력 등

○ 지역 유통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사업시행체계



<유통협의체>

□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 추진 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대규모 액비 소요시책과 연계방안 강구
-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 경종농가

-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결정, 유통주체의 살포 내용확인 및 지도,
- 액비살포시 일부 냄새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액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유통주체에 위탁

○ 전문유통주체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액비 및 저장조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부여
- 경종농가 추가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 사업시행요령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관련 교육 및 홍보실시

○ 청보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는 가급적 액비살포 유도

○ 유통주체는 액비살포시 시장·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대상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 발급 요청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가 액비살포 신고를 할 경우 수시로 액비살포현장을 점검

○ 유통주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에 대해서는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 유통주체가 액비를 살포할 경우 경종농가입회하에 살포를 하고 <붙임 3> 양식에 의거 경종농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살포비지원을 신청 <붙임 4>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살포전 신고내용, 시비처방서, 확인서를 확인하여 살포비 지원

○ 전문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붙임 1>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① 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② 성명(대표자)</td><td></td><td>③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④ 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⑤ 영업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⑥인력 및 장비</td><td colspan="4">○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5톤기준) 대
○ 트 랙 터 : 대 ○ 액비살포탱크(5톤기준) 대
○ 로 터 리 : 대 ○ 경운장비 : 대
○ 기타장비 :</td></tr>
<tr><td>⑦ 농경지확보 면적(ha)</td><td colspan="4">○ 기 확 보 :
○ 확보예정 :</td></tr>
<tr><td>⑧ 액비확보(톤)</td><td colspan="4">톤/일 (축산농가수 호)</td></tr>
<tr><td>⑨ 관리저장조</td><td colspan="4">축산농가 소유 ○○기, 경종농가 소유 ○○기</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 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td></tr>
<tr><td>유의사항</td><td colspan="4">1. 초지 및 농경지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날인이 있어야 함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td></tr>
</table>

<붙임 2>

○○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1조(목적) ○○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 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 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총체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②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③ 액비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④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⑤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⑥ 경종농가 추가확보 및 수요처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축산농가대표 (인)

경종농가대표 (인)

전문유통주체 (인)

○○ 시장군수 (인)

<붙임 3>

액 비 살 포 확 인 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농 가 명 : (☎ :)

□ 살 포 일 시 : 2013년 월 일

□ 살 포 장 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 배 작 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1) 시장·군수 입회, 2) 농가 입회, 3) 미 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액비살포 결과 보고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
(유통주체)</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td><td>③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축산농가</td><td>농 가 수</td><td colspan="3"></td></tr>
<tr><td>수거량(톤)</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살포농가</td><td>농 가 수</td><td colspan="3"></td></tr>
<tr><td>살포면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살포내역</td><td>작 물 별
살포면적</td><td colspan="3"></td></tr>
<tr><td>작 물 별
살 포 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농가 확인서 각 1부.</td></tr>
<tr><td colspan="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td></tr>
</table>

2.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안 호	행)3721 일)220-3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퇴·액비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수거·처리 기계화 장비 지원으로 퇴비 생산·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스키드로다 보급 (대)	30	30	30	139	매년 1월중	가축사육 농가중 전업농 비율로 산출

4. 2013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	30대	600,000	90,000	210,000	30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희망하는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 보급

○ 사업량 및 사업비 : 30대/600백만원(시군별 내역 : 별첨)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20백만원/대

2. 사업시행요령

가. 신청자격

○ 축종구분 없이 축분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

○ 대상자선정 : 시군별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추진요령

○ 상반기 이전에 구입 할 수 있도록 조기 구입지도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의 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선정 의무화

○ 작업내용 등 기계·장비 활용 및 운영관리 실적 기록

다.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고 가축분뇨처리전용 스키드로다 구입 확인 후 자금집행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3.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스키드로다의 사후관리 실시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가축분뇨처리장비 사후관리기간 적용

※ 스키드로다를 취득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금지

⇒ 위반시 회수하여 차 순위자에 전환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3. 1. 2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13. 12. 20

별 첨

스키드로다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30대**	**600,000**	**90,000**	**210,000**	**300,000**	
청주시	2	40,000	6,000	14,000	20,000	
충주시	3	60,000	9,000	21,000	30,000	
제천시	2	40,000	6,000	14,000	20,000	
청원군	4	80,000	12,000	28,000	40,000	
보은군	3	60,000	9,000	21,000	30,000	
옥천군	2	40,000	6,000	14,000	20,000	
영동군	2	40,000	6,000	14,000	20,000	
증평군	1	20,000	3,000	7,000	10,000	
진천군	3	60,000	9,000	21,000	30,000	
괴산군	4	80,000	12,000	28,000	40,000	
음성군	3	60,000	9,000	21,000	30,000	
단양군	1	20,000	3,000	7,000	10,000	

서식 1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 신청계획서

□ 사업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축 산 규 모

- 가축 사육두수　　:　　두(축종별　　)
- 자연순환농업재배 :　　ha(작목별　　)
- 농지 이용계획　　:　　ha(자가　　임대　　)

□ 장비보유현황

구 분	트랙터	○○	○○	○○	○○	○○	○○	기 타
대 수	마력대							

□ 스키드로다 구입계획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구 입 가 격 (천원)				구 입 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스키드로다 구입계획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구 입 가 격 (천원)				구입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3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제조번호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진첨부

3.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안 호	행)3721 일)220-3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법 관리상 사각지대에 있는 육견이 사육 확대됨에 따라 악취민원 발생 증가

○ 악취 제거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주민 불편 민원 해소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개 사육농가에 탈취제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공급농가수	335호	-	-	-	매익년 1월중	탈취제 공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	-	221.1	442.2
도 비	-	-	-	22.1	44.2
시군비	-	-	-	88.4	176.8
자부담	-	-	-	110.6	221.2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 사육 신고면적 60㎡이상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축종 : 개 사육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금액 : 호당 660천원 기준

- 신청농가의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 사육농장 냄새제거를 위한 탈취제 지원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335호	221,100	22,110	88,440	110,5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7.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시·군 제품선정 협의회 구성 → 사업대상자 및 제품선정 →

탈취제 공급 → 사업추진지도·점검 → 사업완료·정산

나. 세부요령

○ 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시·군 제품선정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농가대표 등
  (사업량 및 시군형편에 따라 적의 구성)
- 협의내용 : 탈취제 제품선정, 자부담 납부방법 등
- 제품선정 및 구매 : 제품선정협의회에서 제품 선정시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품목을 최소화하고 공동구매로 구입비 인하 방안 강구

○ 농가공급 제품선정

- 제품선정 협의회에서 선정된 제품

○ 농가 공급방법

- 시·군에서는 자체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공급

○ 사업비 지원

- 농가에서 자부담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특히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 확인 철저

다.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8.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13. 02. 15일까지(별첨 서식1)

○ 제품구입 상황보고 : 2013. 06. 28일까지(별첨 서식2)

○ 사업완료·정산보고 : 2013. 12. 31일까지(별첨 서식3)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계	**335호**	**221,100**	**22,110**	**88,440**	**110,550**	
청주시	-	-	-	-	-	
충주시	91	60,060	6,006	24,024	30,030	
제천시	40	26,400	2,640	10,560	13,200	
청원군	57	37,620	3,762	15,048	18,810	
보은군	11	7,260	726	2,904	3,630	
옥천군	11	7,260	726	2,904	3,630	
영동군	19	12,540	1,254	5,016	6,270	
증평군	1	660	66	264	330	
진천군	43	28,380	2,838	11,352	14,190	
괴산군	27	17,820	1,782	7,128	8.910	
음성군	27	17,820	1,782	7,128	8.910	
단양군	8	5,280	528	2,112	2,640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축 종	사육두수	사 업 비(천원)			
주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2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제품명	회사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제품특성
합 계						

서식 3

사업완료 · 정산보고

(단위 : 호, 천원)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잔액발생 사유 :

4.계(鷄)사 축분처리장비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안 호	행)3721 일)220-3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육계 사육농가 축사내 계분을 효율적으로 처리, 암모니아 가스 사전 제거로 각종 질병발생 최소화

○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재 재활용으로 처리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계분 수거·처리 기계화 장비 지원으로 퇴비 생산·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계분처리 장비보급(대)	2	-	-	-	매년 1월중	장비 보급수

4. 2013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분처리 장비	2대	108,000	32,400	75,60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충주시장, 영동군수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계사 축분처리 장비 보급

○ 사업량 및 사업비 : 2대/108백만원(시군별 내역 : 별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2. 사업시행요령

가. 신청자격

○ 수요 조사시 사업 신청한 농업기술센터

나. 추진요령

○ 상반기 이전에 구입 할 수 있도록 조기 구입지도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의 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선정 의무화

○ 작업내용 등 기계·장비 활용 및 운영관리 실적 기록

다.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고 계분처리 전용 장비 구입 확인 후 자금집행

○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3.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계분처리장비의 사후관리 실시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가축분뇨처리장비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1> : 2013. 1. 2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구입 완료후 15일이내

별 첨

계사 축분처리장비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계	**2대**	**108,000**	**32,400**	**75,600**		
청주시						
충주시	1	54,000	16,200	37,800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	54,000	16,200	37,800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서식 1

계사 축분처리 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구입계획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구 입 가 격 (천원)				구입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2

계사 축분처리 장비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제조번호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도비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진첨부

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박천조	행)3722 일)220-37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4년 6,000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6%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조사료 자급율(%)	91	86	80	89	2014.3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조사료 총공급량)×100
▪ 사료작물 재배면적(ha)	5,500	3,758	3,710	4,926	2014.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2013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볏짚 처리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초지조성 및 보완
사 업 량		4종	111천톤	종자 688톤 비닐 17천롤	53개소	1개소
사업비	합 계	17,220	6,667	2,533	8,000	20
	국 비	3,570	2,000	760	800	10
	도 비	2,224	1,200	304	720	
	시군비	5,189	2,800	709	1,680	
	자부담	6,237	667	760	4,800	10

1-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에 의한 공급을 받는 경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 내역 사전 제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 조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4. 사 업 비 : 6,667백만원(기금 2,000, 도비 1,200, 시군비 2,800, 자담 667)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6.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10%

※ 자담 10%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일리지 제조경비(유류대, 비닐, 네트구입비 등) 지출증빙자료 첨부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 60천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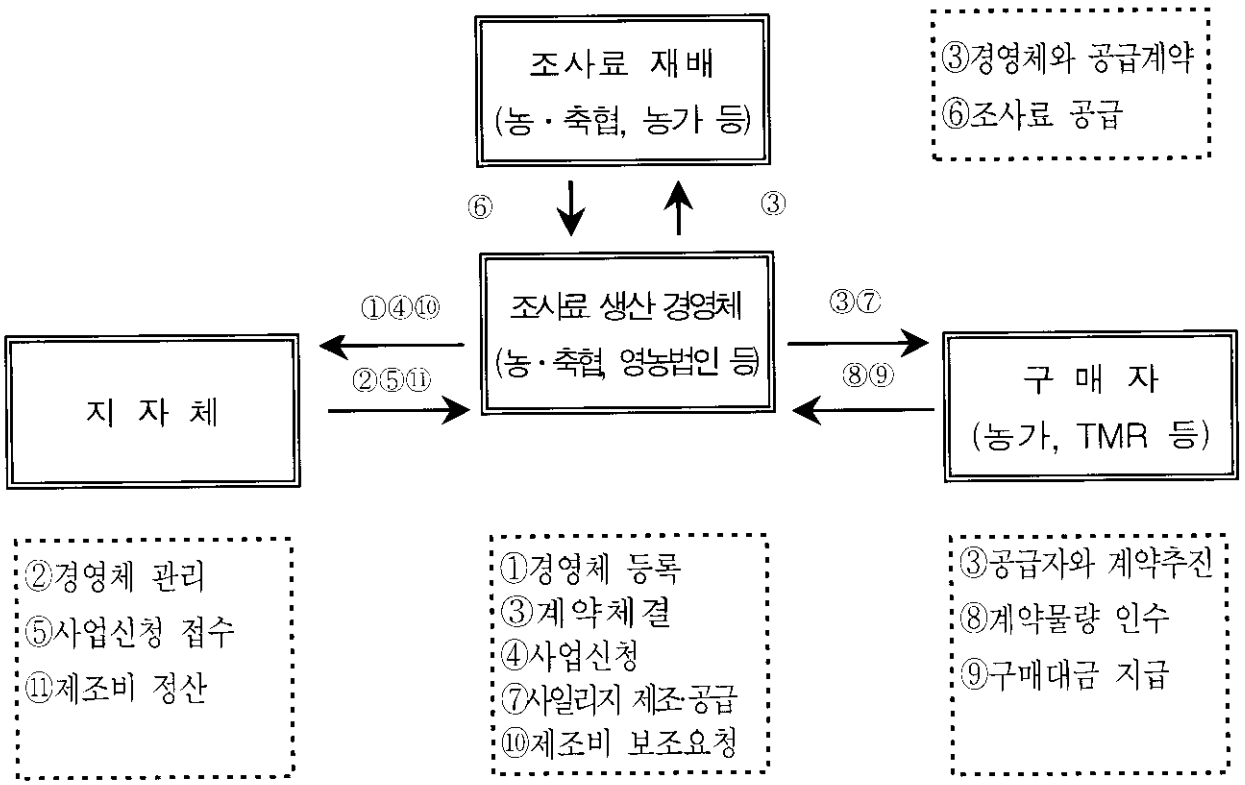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하여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 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28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10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8.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톤)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11,111**	**6,667,000**	**2,000,000**	**1,200,000**	**2,800,000**	**667,000**	
청주시	721	43,269	12,973	7,784	18,162	4,350	
충주시	20,735	1,244,181	373,227	223,936	522,518	124,500	
제천시	3,392	203,559	61,063	36,638	85,488	20,370	
청원군	22,485	1,349,120	404,723	242,834	566,613	134,950	
보은군	15,612	936,760	281,020	168,612	393,428	93,700	
옥천군	11,476	688,554	206,561	123,937	289,186	68,870	
영동군	3,337	200,254	60,068	36,041	84,095	20,050	
증평군	1,120	67,179	20,153	12,092	28,214	6,720	
진천군	6,710	402,592	120,774	72,464	169,084	40,270	
괴산군	12,787	767,274	230,171	138,103	322,240	76,760	
음성군	11,736	704,221	211,257	126,754	295,760	70,450	
단양군	1,000	60,037	18,010	10,805	25,212	6,010	

1-2.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및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다만,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3. 지원대상

○ 종자대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 볏짚처리비 :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사 업 비 : 2,533백만원(기금 760, 도비 304, 군비 709, 자담 760)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대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처리비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6.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30%

○ 볏짚처리비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 곤포 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7.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533,333**	**760,000**	**304,000**	**709,333**	**760,000**	
청주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18,333	5,500	2,200	5,133	5,500	
충주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383,333	115,000	46,000	107,333	115,000	
제천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100,000	30,000	12,000	28,000	30,000	
청원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606,667	182,000	72,800	169,867	182,000	
보은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406,667	122,000	48,800	113,867	122,000	
옥천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66,667	50,000	20,000	46,667	50,000	
영동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50,000	15,000	6,000	14,000	15,000	
증평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50,000	15,000	6,000	14,000	15,000	
진천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220,000	66,000	26,400	61,600	66,000	
괴산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93,333	58,000	23,200	54,133	58,000	
음성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320,000	96,000	38,400	89,600	96,000	
단양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8,333	5,500	2,200	5,133	5,500	

1-3.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1. 사업대상자

○ 조사료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3. 사 업 량 : 53개소

4. 사 업 비 : 8,000백만원(기금800, 도비720, 시군비1,680, 융자2,400, 자담2,400)

5.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10%, 도비9%, 시군비21%, 융자3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30%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 보조지원

7.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별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53**	**8,000,000**	**800,000**	**720,000**	**1,680,000**	**2,400,000**	**2,400,000**	
청주시								
충주시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제천시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청원군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보은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괴산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음성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단양군								
미내시	43	6,500,000	650,000	585,000	1,365,000	1,950,000	1,950,000	

1-4. 조사료 가공시설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량 및 사업비 : '13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신청한 업체 중 농림수산식품부 대상자 선정결과에 의거 지원

- 지원계획 : 사업확정시 사업량 및 사업비 별도 통보계획

3. 사업내용

○ 신규지원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 보완지원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TMR 가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4. 지원비율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 이내(총사업비 18천만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6.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1-5. 기성초지 보완

1. 사업주관 : 괴산군수

2. 사 업 량 : 4.2ha

3.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융자 10)

4. 지원단가 : '13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

5. 사업내용 :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

6.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융자 50%

7.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1-6.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1. 사업대상자

○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조사료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조사료를 유통

3. 지원대상

○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계근시설, 방역시설, 사무시설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9억원 이내(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기준)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8.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1-7.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광역단지) 대규모, 집단화된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중소단지) 지형, 기후 등이 조사료 재배조건에 불리한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광역단지)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5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중소단지)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 조사료용 종자　　○ 조사료 재배용 퇴비(분뇨, 액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 : 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 종자 : 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퇴비 : 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

- 광역단지는 개소당 500ha 범위, 중소단지는 개소당 10ha 범위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8. 기타 세부사항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6.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박천조	행)3722 일)220-37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겨울철 휴경농지 및 연중 조사료 재배확대를 통한기계장비 효율성 증대 및 조사료 생산 장려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4년 6,000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10	'11	'12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사료작물 재배단지(ha)	2,017	1,500	1,500	1,500	2013.1	사료작물 재배실적으로 산출
▪ 조사료 자급율(%)	85	82	83	84	2013.1	재배면적에 따른 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사료작물 재배면적(ha)	5,500	2,233	3,710	4,000	2013.1	시·군별 종자공급량 및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167	900	900	900	1,930
국 비					
도 비	350	270	270	270	579
시군비	817	630	630	630	1,351
자부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초식가축(소, 사슴, 염소 등) 사육 축산농가 및 조사료 생산·제조하는 조사료 경영체, 생산자단체(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지를 확보하여 사료작물(호밀, 청보리, IR,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경종농가의 경우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사일리지 제조계약으로 생산한 농가에 한해 지원

○ 지원조건

- 개별농가 0.5ha이상, - 경영체, 생산자 단체 : 3ha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농지임차료 등 보전

4.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지원한도액 및 기준

○ 지원 한도액 (단위 : ha, 천원)

구 분	동절기	연 중
임차농지	600천원/ha (200원/평당)	1,500천원/ha (500원/평당)
자가농지	200천원/ha (66원/평당)	300천원/ha (100원/평당)

※ 임차료등 지원 한도액이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초과액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비로 지원 가능

【용어정의】

○ 임차농지 : 타인 소유 농지(토지)로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농지
○ 자가농지 : 본인농지 및 아래사항 포함
· 직계 존·비속 농지 또는 소 5두 이상 사육 축산농가의 농지
· 조사료 경영체가 경영체 소속 농가의 농지(토지)를 임차 한 경우
※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확인으로 토지 소유자 확인

○ 지원 기준
- 연중재배의 경우 동계, 하계 이모작 재배의 경우만 지원
· 하계 작물만 재배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제외>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원 농지
- 녹비작물용 종자를 사료포로 이용하는 농지
- 지목이 과수원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농지 등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2,017	1,930,500	579,150	1,351,350	사업량은 자가 및 임차농지에 따라 변경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7. 사업 추진요령

1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 동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토지) 지번별 지적 등을 작성하여 시·군 및 읍·면에 신청
· 개별농가 (0.5ha 이상) : 축산농가 ⇒ 읍·면·동 ⇒ 시·군
· 대단위단지(3ha 이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시·군

나. 사업신청서 검토 및 확인(시·군)

- 지번 및 지적 검토 : 농정부서 및 관련부서 공부확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확인)

다.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12년대비 신규 재배면적이 많은 신청자
- 2순위 :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대규모, 집단화)한 신청자
  ※ 시·군 상황에 따라 개별농가, 경영체 구분 평가 지원 가능
- 3순위 : 연중재배 확보면적이 많은 신청자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자금 집행 시기 : 10 - 11월 동계 사료작물 파종확인 후 집행

○ 사업 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사료작물 파종여부 확인
- 연중재배의 경우 반드시 동계, 하계 이모작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 실경작 확인서 또는 담당 공무원 현지 확인서(사진 첨부)

8. 행정사항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신청(축산농가·단체 → 시·군) : '13. 3. 10까지 <서식 1>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고(시·군 → 도) : '13. 4. 10까지 <서식 2>

○ 파종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대상자) : '13. 12. 15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 → 도) : '13. 12. 31까지<서식 3>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ha)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17**	**1,930,500**	**579,150**	**1,351,350**		
청주시	**24**	**23,000**	6,900	16,100		
충주시	**326**	**314,000**	94,200	219,800		
제천시	**85**	**80,000**	24,000	56,000		
청원군	**440**	**424,500**	127,350	297,150		
보은군	**288**	**277,000**	83,100	193,900		
옥천군	**200**	**194,000**	58,200	135,800		
영동군	**40**	**40,000**	12,000	28,000		
증평군	**60**	**55,000**	16,500	38,500		
진천군	**140**	**128,000**	38,400	89,600		
괴산군	**220**	**212,000**	63,600	148,400		
음성군	**170**	**160,000**	48,000	112,000		
단양군	**24**	**23,000**	6,900	16,100		

서식 1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생산자단체(농가) : (참여회원 : 명)

○ 주 소 :

○ 가 축 사 육 두 수 : 두(한육우 , 젖소 , 기타)

□ 대상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 번	지적(㎡)	지 목	농지 소유자	비 고 (자가, 임차)
계					

□ 사료작물 재배계획

○ 재배면적 : ha

○ 재배초종 :

○ 종자확보량 : kg(작물별 :)

위와 같이 2013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 . .

축산단체명(농가) :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료작물 재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료작물 재배단지 현황

사업대상자		축 종	사육 두수	구분 (자가,임차)	재배 계획 (ha)	사 업 비(천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계	도 비	시군비
계								

서식 3

사료작물 재배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료작물 재배단지 현황

사업대상자		재배 면적 (ha)	구분 (자가,임차)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별 첨

농지 실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농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합 계							

《실경작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확인자》

□ 마을대표

○　　읍면동　　리　　마을대표 :　　(인)

○ 마을대표 전화번호 :

□ 담당공무원

○　　읍면동　　직　　성　명 :　　(인)

붙 임 : 파종 또는 조사료 재배 관련사진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함.

2013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장려금 청구서

□ 청구 내역

농지 소재지	총 면적 (ha)	지원구분		재배형태면적(ha)		청구 금액 (원)	비고
		자가	임차	동계	연중		

※ 지급 대상 지번별 조서 : 별첨

□ 계좌 번호 : (　　은행)

상기와 같이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장려금을 지급 청구합니다.

2013.　　.　　.

조사료 생산자 주소(단체명) :

성　　명 (대표자)　　:

시장, 군수 귀하

7. 볏짚 곤포 네트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천조	행)3722 일)220-3722

1. 목 적

○ 농산 부산물인 볏짚 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

○ 곤포 생산을 위한 네트지원으로 양질의 볏짚 곤포제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대상자

○ 볏짚을 이용하여 곤포를 제조하는 축산농가(단체)

- 조사료 생산 경영체 우선 지원

○ 농림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볏짚 처리비 지원 비닐 구입 농가

※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곤포 제조용 네트 구입비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200천원/네트 1롤

- 1롤(3,000m)로 16ha처리(볏짚 곤포 기준 200개 내외)
- 볏짚 : 곤포 비닐 10롤 / 네트 1롤

※ 곤포 제조 장비에 따라 네트 규격은 변경 가능하며 지원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2,000	400,000	60,000	140,000	200,000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8. 사업추진 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농.축협**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농축협 접수 ⇒ 시.군
- 사업희망자의 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곤포 비닐 구입농가 희망 제품에 대한 농가별 지원물량 확정, 공급

※ 시.군과 농.축협이 협의하여 비닐 구입시 네트 제품선정 및 구입

- 곤포 비닐 공급시 네트공급 병행 시행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 하고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 농가에서는 볏짚 곤포 제조 네트 선정을 위한 보유 기계장비 및 비닐에 따른 제품 신청 철저
- 정량 구입 및 구입 제품을 이용한 볏짚 곤포 제조
- 자부담 납부 및 사업 정산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준수

○ 농·축협에서 자부담금 지원 또는 납부시 농·축협을 간접 보조사업자로 해서 보조금 지급 위임 가능

○ 담당공무원은 네트 공급시 납품 수량등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8.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1> : 2013.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2013. 12. 31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천원)				비 고
	면적(ha)	롤(2,000m)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2,000**	**2,00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청주시	320	20	4,000	600	1,400	2,000	
충주시	3,680	230	46,000	6,900	16,100	23,000	
제천시	1,440	90	18,000	2,700	6,300	9,000	
청원군	7,680	480	96,000	14,400	33,600	48,000	
보은군	5,920	370	74,000	11,100	25,900	37,000	
옥천군	1,600	100	20,000	3,000	7,000	10,000	
영동군	1,120	70	14,000	2,100	4,900	7,000	
증평군	800	50	10,000	1,500	3,500	5,000	
진천군	2,560	160	32,000	4,800	11,200	16,000	
괴산군	3,040	190	38,000	5,700	13,300	19,000	
음성군	3,520	220	44,000	6,600	15,400	22,000	
단양군	320	20	4,000	600	1,400	2,000	

서식 1

볏짚 곤포 네트 지원사업 신청 내역

사업대상자		사업량(롤/ha)		사업비(천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롤	재배 면적	계	도비	시군 비	자담
계							

서식 2

볏짚 곤포 네트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롤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 임 장

<table>
<tr><td>금 액</td><td colspan="4">일금 원정(₩)</td></tr>
<tr><td rowspan="3">수임자</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업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able>

상기 금액을 2013년 **볏짚 곤포** 네트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임 자 농가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 · ○○군수 귀하

8.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축산	박천조	행)3722 일)220-3722

1. 목　　적

○ 조사료의 연중공급 체계 구축 및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확대에 따른 옥수수 수확장비 필요

○ 고가의 장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장비활용도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조사료 생산 경영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4.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시군에서 구입할 경우 자담분은 시군비로 대체하여 사업 추진

5. 지원단가

○ 옥수수 수확장비 1식 : 300백만원(도비 54, 시군비 126, 자담 120)

※ 기종 및 규격에 따라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시군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가 부담 가능

6. 지원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의무량

○ 사용용도 :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트랙터,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 하베스터, 결속기, 랩팽기, 호퍼, 옥수수 전용 파종기 등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 1식
- 트렉터만 구입할 경우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곤포 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한함

○ 사업 의무량 : 옥수수 수확장비 1식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5개소	1,500,000 (100%)	270,000 (18%)	630,000 (42%)	600,000 (40%)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8. 사업추진 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지역 농축협 및 조사료 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담 확보, 작업대행시 인력확보, 장비 임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 제출
- 기계·장비 기종 선정시 농가의견 수렴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종 선택
-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시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 및 조사료 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례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9.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1> : 2013.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2013. 12. 31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5**	**1,500,000**		**270,000**	**630,000**	**600,000**	
청주시							
충주시	1	300,000		54,000	126,000	120,000	
제천시	1	300,000		54,000	126,000	120,000	
청원군	1	300,000		54,000	126,000	120,000	
보은군	1	300,000		54,000	126,000	120,000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1	300,000		54,000	126,000	120,000	
단양군							

서식 1

옥수수 수확장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대상자 현황

○ 사업대상자 : ○○축협(조합장),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13년 하계작물 재배 예상면적 : ha(옥수수 , 수단)

□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계획

장비명칭	제조(수입)업체명	수량	규격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고(구입예정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2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 현황

○ 사업대상자 :○○축협, ○○경영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추진 실적

장비명	제조업체명	수량	규격	제조번호	단가(천원)	사업비 집행(천원)								도비 집행잔액(원)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관련 장비 사진첨부

9.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지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1. 목 적

○ 양축농가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일반 시공된 콘크리트 사료조를 세균감염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교체 및 시공하여 친환경 축산 지원

○ 유지 및 관리의 편의성 증대로 관리비용 및 사료비 절감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괴산군수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사료조 방수시설 설치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 가입회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사료조 방수시설 설치
- 지원기준 : 개소당 2,000천원

※ 축사 시설에 따른 지원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추진

6. 지원비율

○ 도비 100%

7.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괴산군	50개소	100,000	100,000	0	0	

8.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 콘크리트 사료조 설치 농가 중 다두 사육농가 우선 선정
  - 축사 면적 및 시공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농가수 조정 지원
- 사업신청서 내용
  - 코팅재료(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설치면적,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신청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 하고 도에 보고
-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부족액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시설 설치를 통한 사업비 인하 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

- 공동 시설 설치를 통한 사업비 인하로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수 있도록 협조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사후봉사(A/S)가 용이한 업체 선정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물품구입 및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공동 시설설치로 시공 업체를 선정 추진할 경우 시설 설치 확인 후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시공업자를 간접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위임 가능

9.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조기 사업추진으로 사료조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과 사료비 절감 기여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3. 2. 29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서식 1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1. 농 가 명 : **(전화번호 :)**

2. 주 소 : **(성 명 :)**

3. 설치예정지 :

4. 투자계획

업체명	수 량 (m)	재 질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13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2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보고

사 업 대 상 자		수 량 (m)	재 질	단 가 (천원)	투자계획(천원)			
주 소	성 명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3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 지원 완료 및 정산보고

<괴산군>

사업대상자		수량 (m)	재질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획				실적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진첨부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3년 사료조 방수(코팅)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임 자 농가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 · ○○군수 귀하

10.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1. 목 적

○ 조사료 가공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사료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TMR사료공장의 경영정상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보은군, 괴산군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개보수, 창고 등 지원(화물차량은 지원 제외)

※ 소독시설이 없는 업체는 사료공장 출입구에 고정식(터널식) 소독시설 의무설치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영농법인 운영 TMR사료공장

5.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지원단가 : 190백만원/개소당

7. 사업량 및 사업비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	380,000 (100%)	68,400 (18%)	159,600 (42%)	152,000 (40%)	
보은군	1	190,000	34,200	79,800	76,000	
괴산군	1	190,000	34,200	79,800	76,000	

8. 세부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및 지도감독 등 제반사항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 수립 추진,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2 세부 추진요령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계획수립 시행 : 사업신청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

○ 기계·장비는 1년이상 A/S 가능한 기종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검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실적 제출시 당초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무통장입금확인 등)를 확인(징구)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부당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은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회수 조치

9.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실시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조사료장비 사후관리기간 적용(5년)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서 보고<서식 1> : 2013. 2. 28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서식 1

조사료 가공 시설 보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현황

○ 생산자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조사료 가공장 이용호수 및 생산량

- 이용호수 : 호
- 생 산 량 : 톤/월

□ 세부시설 투자계획

세부시설명	규격	수량	투자계획(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2

조사료 가공 시설 보완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생산자단체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시설명	규격	수량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사진첨부

11. 축산 경영정보지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의 정보제공과 신기술 습득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축산전문지 공급으로 전문화된 정예 축산인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우선순위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친환경축산농가
- 도지사품질인증 및 한우광역브랜드참여농가

※ 정보지는 축산농가의 의견수렴 선택 구독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금액 : 72천원/농가(6천원/월 기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 경영정보지 구독료 지원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20%, 시군비 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500 부	36,000	7,200	28,800	

※ 사업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7. 추진요령

○ 사업지침시달 및 사업비 배정 (도 → 시군)

○ 공급대상자 선정 및 경영정보지 확정 (시군)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

8. 행정사항

○ 경영정보지 공급대상자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및 정산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부)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500	36,000	7,200	28,800
청 주 시	10	720	144	576
충 주 시	60	4,320	864	3,456
제 천 시	30	2,160	432	1,728
청 원 군	120	8,640	1728	6,912
보 은 군	50	3,600	720	2,880
옥 천 군	20	1,440	288	1,152
영 동 군	25	1,800	360	1,440
증 평 군	10	720	144	576
진 천 군	55	3,960	792	3,168
괴 산 군	40	2,880	576	2,304
음 성 군	70	5,040	1008	4,032
단 양 군	10	720	144	576

서 식1

축산경영정보지 보급대상자 선정보고

시 군	정보지 명				비 고
	○○○				
	부				

서 식1

축산경영정보지 정산보고

시군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비 고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12. 가축생균제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료에 생균제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사료효율 상승

- 파리발생 억제 및 축사환경을 개선, 소화력 증진으로 증체 도모

○ 분뇨악취를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 돼지, 닭, 오리, 개 사육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등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생균제 공급농가수	500호	839	350	500	매익년 1월중	가축생균제 공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8,000	700	1,000	1,000	1,000
도 비	1,185	70	100	100	100
시군비	2,815	280	400	400	400
자부담	4,000	350	500	500	5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오리, 개 사육농가

※ 면역증강물질 공급사업 등 타 유사사업 지원농가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아미노산제, 생균제, 비타민제, 효소제, 규산염제, 추출제 등) 구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으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제품 우선 구매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보조+자담)

(단위 : 천원)

구 분	소			돼 지			닭·오리			개
사육 규모	30두 미만	30~ 49	50두 이상	1,000두 미만	1,000~ 1,499	1,500두 이상	30,000수 미만	30,000~ 39,999	40,000수 이상	50두 이상
지원 한도	1,000	1,600	2,000	3,000	4,000	5,000	2,000	3,000	4,000	1,000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500호	1,000,000 (100%)	100,000 (10%)	400,000 (40%)	5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시·군 제품선정 협의회 구성 → 사업대상자 및 제품선정 →

생균제 공급 → 사업추진지도·점검 → 사업완료·정산

나. 세부요령

○ 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오리, 개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참여농가 및 축산업 등록농가

②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가축분뇨를 액비 자원화 처리하는 축산농가

○ 시·군 제품선정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축종별 농가대표 등
- 협의내용 : 생균제 제품선정, 자부담 납부방법 등
- 제품선정 및 구매 : 제품선정협의회에서 제품 선정시 축종별로 선호하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품목을 최소화(축종별 1~3품목)하고 공동구매로 구입비 인하 방안 강구

○ 농가공급 제품선정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아미노산제, 생균제, 비타민제, 효소제, 규산염제, 추출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으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 농가 공급방법

- 시·군에서는 자체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공급
- 생균제 공급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생균제 효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내에 사용되도록 사업량에 따라 3~4차에 걸쳐 공급

○ 사업비 지원

- 신청농가의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개소당 한도액(축종별·규모별) 이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가능(보조 50%, 자담 50%)
- 농가에서 자부담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특히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 확인 철저

다.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

○ 농가별로 생균제 사용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로 제품선정 및 사용 방법 지도 자료로 활용

9.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13. 02. 15일까지(별첨 서식1)

○ 제품구입 상황보고 : 2013. 06. 28일까지(별첨 서식2)

○ 사업완료·정산보고 : 2013. 12. 31일까지(별첨 서식3)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호)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500	1,000,000	100,000	400,000	500,000
청주시	2	4,000	400	1,600	2,000
충주시	67	134,000	13,400	53,600	67,000
제천시	29	58,000	5,800	23,200	29,000
청원군	99	198,000	19,800	79,200	99,000
보은군	37	74,000	7,400	29,600	37,000
옥천군	13	26,000	2,600	10,400	13,000
영동군	19	38,000	3,800	15,200	19,000
증평군	15	30,000	3,000	12,000	15,000
진천군	72	144,000	14,400	57,600	72,000
괴산군	80	160,000	16,000	64,000	80,000
음성군	60	120,000	12,000	48,000	60,000
단양군	7	14,000	1,400	5,600	7,000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축 종	사육두수	사 업 비(천원)			
주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2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제품명	회사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제품특성
합 계						

서식 3

사업완료 · 정산보고

(단위 : 호, 천원)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3.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 시설·장비 보급 농가수	650호	352	466	650	매년 1월중	'13.1~12월까지 시설·장비 보급 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600	800	2,600	2,600	2,600
도 비	390	120	390	390	390
시군비	910	280	910	910	910
자부담	1,300	400	1,300	1,300	1,3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한·육우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젖　　소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돼　　지 : 사육규모 500두 이상인 농가
- 　닭　　: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오　　리 :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사　　슴 : 꽃사슴 20마리, 엘크 10마리 이상인 농가
- 염　　소 : 사육규모 50마리 이상인 농가
- 　개　　: 사육규모 100마리 이상인 농가
- 메 추 리 :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시설·장비 품목중 지원한도액 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
- 제품 선정은 품질보증(인증) 또는 A/S가 용이한 제품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품목 : 1농가당 1품목 지원하며 품목은 조견표 내에서 자율 선택
단, 호당 지원수량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신규 신청 농가 우선지원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650호	2,600,000 (100%)	390,000 (15%)	910,000 (35%)	1,3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보고
  · 농가에서 자부담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특히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 확인 철저

○ 농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9.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가 최고 지원한도액보다 미달되게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자체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

○ 사업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시장, 군수는 지원장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 → 시군	1. 18	서식 1호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1. 30	서식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매분기 익월10일한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 축종별 지원 시설 · 장비 조견표(29종)

축종	시설 · 장비	호 당 지원수량	지원단가 (천원)	지원한도액 (천원)
소 (한육우, 젖소)	송아지방	4대	500	2,000
	스탄존(개체보정자동목걸이)	10조(4두정도/조)	200	2,000
	냉각기(2톤, 젖소)	1대	10,000	10,000
	자동브러시	1조(한도내 물량조정)	1,400	2,800
	젖소 착유시설	1조	10,000	10,000
돼지	악취저감장치(소취관)	1대(비육1,000두당)	13,000	13,000
	냉방시설(지하수이용)	1식	7,000	7,000
	돼지인공포유기	1대	3,500	3,500
닭,오리	양계 니플급수기	1농장 기준	6,000	6,000
	왕겨살포기	1대	5,000	5,000
	양계사료급이기	1농장 기준	6,000	6,000
공통 사항	대형환기휀(환기휀,에어쿨, 송풍기입배기판 및 컨트롤러(무창계사))	1농장 기준	4,000 (단 무창계사입배기판 및 컨트롤러는 6,000)	4,000 (단 무창계사입배기판 및 컨트롤러는 6,000)
	자가발전기	1대	7,000	7,000
	열풍기(온풍기)	8대	500	4,000
	축사냉온수자동분무시설·장비	1농장 기준	10,000	10,000
	수질개선기	1대	2,000	2,000
	고압소독세척기	1대	3,000	3,000
	폐사축처리기	1대	20,000	20,000
	예방백신 보관 냉장고	1대	300	300
	사료빈 환풍기(온도조절)	4개	250	1,000
	해충 포충기(모기퇴치)	10기(300㎡당1대)	120	1,200
	미네랄 블록 고정대	10개	50	500
	AI방역용 야생조류 차단망 지원	1조	5,000	5,000
	이동식계근기(조사료)	1조	10,000	10,000
	출하용 계근대 (지상 · 지중식)	1기	20,000	20,000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장비 지원	1대	8,500	8,500
	개체관찰 CCTV (회전,줌,야간기능)	1조	3,000	3,000
	사료배합기	1대	5,000	5,000
	사료자동급이기	1조	10,000	10,000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배정량(호)	예 산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650**	**2,600,000**	**390,000**	**910,000**	**1,300,000**
청주시	10	40,000	6,000	14,000	20,000
충주시	80	320,000	48,000	112,000	160,000
제천시	40	160,000	24,000	56,000	80,000
청원군	150	600,000	90,000	210,000	300,000
보은군	70	280,000	42,000	98,000	140,000
옥천군	40	160,000	24,000	56,000	80,000
영동군	30	120,000	18,000	42,000	60,000
증평군	15	60,000	9,000	21,000	30,000
진천군	55	220,000	33,000	77,000	110,000
괴산군	70	280,000	42,000	98,000	140,000
음성군	80	320,000	48,000	112,000	160,000
단양군	10	40,000	6,000	14,000	20,000

서식 1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참여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천원	천원

상기와 같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잔액 (원)
	품목	호수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획								
실적								
비율								

※ 품목별 구분 작성

14.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박원근	행)3723 일)220-3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생산확대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

○ 친환경 축산물 품질인증으로 브랜드 파워 및 소비자 신뢰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항생제 무첨가 사양시스템 확대 보급으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 친환경축산물인증 농가수	500	366	377	477	매년 1월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통계로 산출

4. 연도별 재정 투입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60	108	108	180	180
도 비	80	54	54	54	54
시군비	80	54	54	126	12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희망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 HACCP 지정후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
- 2순위 : HACCP 지정신청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 3순위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희망농가
- 4순위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재인증 희망 농가

○ 협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시군출장소), 민간인증기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수질, 사료, 유해잔류물질 등), 기타 소요 비용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

○ 지원한도액 : 농가당 900천원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200호	180,000 (100%)	54,000 (30%)	126,000 (7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13. 1. 25.
-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
- 신청서류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서식】

○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2013. 1월) • 세부사업지침 (도 ⇒ 시군)

⇓

사업신청 (2013. 1. 25) • 신청서 접수 〔농업인 ⇒ 시군〕

⇓

대상자 선정 (2013. 1. 31) •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시군 ⇒ 도)

⇓

지급대상자 확정 (2013. 2. 8) •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확정(도 ⇒ 시군)

⇓

보조금 지급 (2 ~ 12월) • 농가별 지급 (시군)

○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시장 · 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2】에 따라 2013. 1.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도 (시장 · 군수)
  - ▪ 사업대상농가에게 2013. 2. 10일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 사업시행전 인증농가 지원가능(2012. 12월 ~ '13. 대상자 통보전)

○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 · 군수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를 확인 후 축산농가 지정 입금계좌로 지급
  - ▪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수질, 사료검사, 유해잔류물질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지출 증빙자료 확인
- 시장 · 군수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농가별로 지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별지3서식】

9. 행정사항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 · 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 신청서 제출	농가 → 시 · 군	1. 25	별지 1호
대상자 선정 및 보고	시 · 군 → 도	1. 31	별지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 · 군→ 도	· 사업종료후 20일 이내	별지 3호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호)	예산액(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200**	**180,000**	**54,000**	**126,000**	
청주시	3	2,700	810	1890	
충주시	28	25,200	7560	17640	
제천시	13	11,700	3510	8190	
청원군	50	45,000	13500	31500	
보은군	8	7,200	2160	5040	
옥천군	12	10,800	3240	7560	
영동군	3	2,700	810	1890	
증평군	2	1,800	540	1260	
진천군	16	14,400	4320	10080	
괴산군	15	13,500	4050	9450	
음성군	32	28,800	8640	20160	
단양군	18	16,200	4860	11340	

[별지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신청서

농장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명 :

구분	인증 종류	축종		농 장 소 재 지			지번	사 육 마리수	인증신청 예정일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축산 규모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1. 인증종류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2. 품목별 분류 : (대분류) 소, 돼지, 닭, 기타중 하나를, (소분류)(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별지2]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성 명	축종	주 소	인증유형	사 육 마리수	인증신청 예 정 일
			무항생제 축 산 물		

[별지3]

□ 보조금 정산보고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집행잔액 사유 :

○ 첨부 : 인증서사본 1부.

축산물위생팀

1. 쇠고기이력제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신동앙	행)3732 일)220-37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계별(사육,도축,가공,판매) 정보 기록·관리로 추적시스템 구축

○ 소의 질병 및 쇠고기 위생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2. 근거법령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	합 계	875	767	746	738
	기 금	521	458	373	369
	도 비	107	93	112	111
	시군비	247	216	261	258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9개 위탁기관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귀표부착비(이력관리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교부)

3. 지원비율

○ 귀표부착비 : 기금 50% , 도비 15%, 시·군비 35%

- 위탁기관 부착 시 : 9,300원/두

- 자가부착농가 부착 시 : 6,260원/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귀표부착비 : 지급대상기간 '12.12.1 ~ '13.11.30

○ 이력관리비 : 농식품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교부

5. 사업량 및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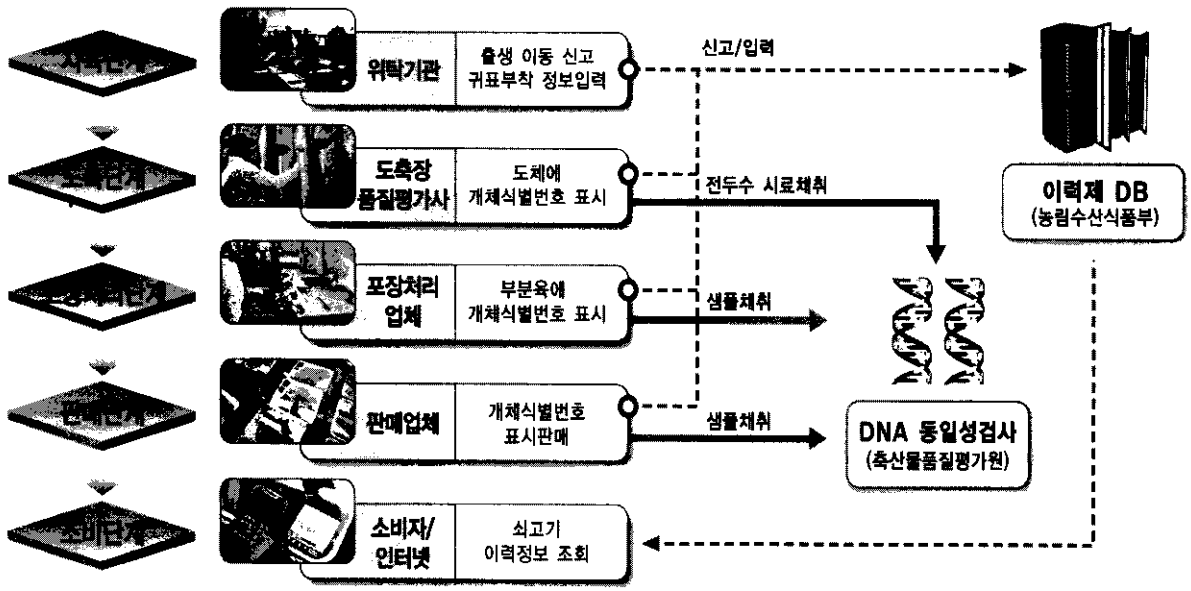
○ 사업량 : 79,400두

○ 사업비 : 738,420천원(기금 369,210, 도비 110,763, 시·군비 258,447)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1 참조

6. 사업내용

【 쇠고기 이력제 추진체계 】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육우의 경우 7일)**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③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⑤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안심장보기 어플 이용)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 수입쇠고기에 대하여도 쇠고기이력표시제 시행

○ 시행일자 : 2010. 12. 22일부터 시행

○ 대상업소 : 쇠고기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 표시방법 :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식육표지판에 수입쇠고기 개체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7. 행정사항

○ 지급대상기간이 '12.12.1~'13.11.30일까지 귀표부착 실적임

○ **보고 및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 2013. 1. 10(붙임 1)
-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붙임 2)
- **사업완료 보고** : '14. 1. 20(붙임 3)
- 관할지역의 귀표부착,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업무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

《붙임 1》

사업 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 시·군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12.12.3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13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 귀표부착 대상두수는 가임암소의 출산율(한우 75%, 젖소 68%)을 고려, 산출

나. '13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12.12.3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13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13년 DNA동일성 검사량(축산위생연구소)

검사기관별	'13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위탁기관별 귀표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내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

쇠고기 이력제 추진 실적

□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도축장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식육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 실적

포장처리 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소 매매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우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 중개상, 수집상은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분기별 정기검사대상농가 등

□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예) 30일이내 귀표 미부착 00건 적발

□ 시·도별 「쇠고기 이력제 운영협의회」 운영 실적

○ 운영협의회 운영실적 : 회

○ 주요내용

□ 기타 실적

《붙임 3》

쇠고기이력제 정산 내역 보고서식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79,400**	**738,420**	**369,210**	**110,764**	**258,446**	
청주	1,720	15,996	7,998	2,399	5,599	
충주	8,680	80,724	40,362	12,109	28,253	
제천	5,600	52,080	26,040	7,812	18,228	
청원	21,000	195,300	97,650	29,295	68,355	
보은	9,900	92,070	46,035	13,811	32,224	
옥천	6,200	57,660	28,830	8,649	20,181	
영동	3,700	34,410	17,205	5,161	12,044	
증평	1,800	16,740	8,370	2,511	5,859	
진천	5,200	48,360	24,180	7,254	16,926	
괴산	6,100	56,730	28,365	8,510	19,855	
음성	8,000	74,400	37,200	11,160	26,040	
단양	1,500	13,950	6,975	2,093	4,882	

2.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신동앙	행)3732 일)220-37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등 전문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2013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	합 계	224	160	528	560
	기 금	67	48	211	224
	도 비	67	48	48	50
	시군비	-	-	111	118
	자 담	90	64	158	168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장분야)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 (축산물영업장 분야)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보관·운반업, 집유업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 적용시 비용지원

3.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4. 지원기준

○ 지원단가 : 8,000천원/개소

5.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70개소

○ 사업비 : 560,000천원(기금 224,000, 도비 50,400, 시·군비 117,600, 자담 168,000)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1 참조

6.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13. 1. 20(붙임 8)

○ **계약 체결 사황 보고** : '13. 2. 20(붙임 9)

○ **정산 보고** : '14. 1. 20(붙임 10)

7. 축산물 HACCP컨설팅 주요내용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가)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 및 집유업체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8.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요건

○ 농장분야

- 수의사, 축산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 축산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수의, 축산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고졸 : 10년이상, 대졸 : 7년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농장관련 컨설팅 · 교육 · 기술개발 · 업체/기관근무(농장관리 등)

○ 축산물영업장 분야

- 수의사, 축산 · 수의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및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축산 · 수의 · 식품관련 학사학위가 있는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축산, 수의, 식품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해당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이상, 대졸 : 7년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9. 컨설팅업체 운영지침

① 컨설팅 계약의 체결

○ 계약은 붙임 <서식 5> 표준계약서(안)에 따라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업체)가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붙임 <서식 6>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컨설팅업체는 체결된 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농장(업체)**와 **컨설팅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시군에** 제출한다.

② 컨설팅의 수행

○ 컨설팅업체 등록지침상의 컨설팅 등록분야별로「축산물 HACCP 컨설팅 주요내용」을 농장(업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수행기간 동안에 농가(업체)별 **10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컨설팅은 연간컨설팅수행계획<서식 6>에 따라 수행하고, 붙임 <서식 7>의 컨설팅업무수행일지에 그 수행 내용을 기록하며, 컨설팅계약서, 연간컨설팅수행계획 및 업무수행일지를 농가(업체)와 컨설팅 등록업체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농가(업체)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시군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지급을 신청한다.

○ 컨설팅 업체는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계약농가·업체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③ 컨설팅 완료 후 HACCP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

○ 컨설팅업체는 농가(업체)의 컨설팅이 완료되면 HACCP 기준원에 HACCP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HACCP기준원의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이해 추가 **컨설팅을 3회**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농가(업체) HACCP지정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HACCP기준원(시·도)의 조사·평가시까지 사후관리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 농식품부는 농가(업체) 컨설팅이 완료된 경우 HACCP 지정·조사평가 등 컨설팅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업체 평가 및 정책에 활용한다.

⑤ 컨설팅 업체 교육 및 지도 점검

○ 컨설팅업체 등록 완료 후 농식품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등록업체 교육을 실시한다.

○ **시군**은 컨설팅업체에 대한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등 지도 감독한다.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계약수행내용, 컨설팅 이행사항 등 컨설팅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 농식품부는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단을 편성하여 농가(업체)의 컨설팅 수행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⑥ 컨설팅업체(컨설턴트 포함)의 위반사항 제제조치

○ 컨설팅 업체가 농가(업체) 모집을 위해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컨설팅 보조금을 타용도 사용 등 부당하게 컨설팅 예산을 사용한 경우, 또는 컨설팅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 즉시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컨설팅 업체 등록은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등록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 경우 제제조치는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게 함께 적용한다.

※ 컨설팅 예산 부당편취, 자부담 허위납부 등이 발견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해당농가(업체)를 함께 고발조치한다.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다.

○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결과 등을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이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에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농가(업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한다.

⑦ 컨설팅업체 콘소시움 구성운영 등 기타사항

○ 컨설팅 업체등록 후, 등록업체가 타 업체(컨설팅 등록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농식품부에 협약체결서 사본(협력업체 회사소개 및 컨설턴트 등 참여인력 현황 포함)을 첨부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컨설팅 등록업체간 협약체결을 통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업체와 협력업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관업체에서 대상농가(업체)와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협력업체는 협약체결 사항에 따라 컨설팅 참여)

<붙임 1>

축산물 HACCP컨설팅 업체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전 화		FA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 분야	☐ 한육우, ☐ 젖소, ☐ 돼지, ☐ 닭・오리, ☐ 식육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보관・운반업, ☐ 집유업		

구 분		관련분야 전공자 (수의사・유자격자 제외)						수의사	유자격자		관련업체 기관 경력자	신지식 농업인, 농업전문학 교졸업자	기 타	총계
		축산・수의분야			식품분야									
		박사	석사	학사	박사	석사	학사		축산기술사 및 기사	식품기술사 및 기사				
내부 (명)	전문인력													
	기타인력													
외부전문인력(명)														

위와 같이 축산물HACCP 컨설팅 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외부전문가 포함) 보유현황 1부
4. 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5. 회사소개 및 컨설팅 신청업체 사업실적 1부

<붙임 2>

축산물 HACCP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

년 월 일 기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속 직책	자격 및 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분야 (구체적으로)	근무경력 (기관)	비 고
홍길동 600000-1234567	(주민등록상주소) ( )		전문인력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록	컨설팅 분야 및 주요컨설팅 내용을 기록		
-	( )					
-	( )					
-	( )					

주) 1. 고용컨설턴트 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2.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외부인력의 컨설팅 참여 협약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붙임 3>

축산물 HACCP컨설팅 수행계획서

※ HACCP컨설팅 수행계획 작성시 포함할 내용

○ 컨설팅 대상분야,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 기술

○ 등록컨설턴트, 외부전문가 활성 및 타업체와 협력방안 등 인력 활용방안

○ 컨설팅 추진일정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붙임 4>

회사소개 및 HACCP컨설팅·교육사업 실적 기술서

1. 회사소개

○ 회사개요, 설립목적, 주요사업 분야소개

○ 회사조직도 및 기능·역할 등

2. 컨설팅 및 교육사업 실적(최근 2년간)

기간 및 장소	대상자 (업체)	컨설팅 및 교육 내용	컨설턴트 또는 강사	비고

주) 1. 컨설팅 및 교육실적 확인 가능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 첨부

<붙임. 서식 5>

축산물 HACCP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농가·업체(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지정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지정신청 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8,000,000원 : 총 금액

   ₩ 2,400,000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5,600,000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2013년 월 일

농가·업체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컨설팅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첨 부)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의 (농장 또는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가)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 및 집유업체)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기타 HACCP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HACCP 지정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시 부터 "갑"의 (농장 또는 업체) HACCP 지정신청 시 까지로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붙임. 서식 6>

연간 HACCP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붙임. 서식 7>

(앞 쪽)

HACCP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2013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팅 수행자 : (인)

일반사항			
컨설팅 농가·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수행항목			
컨설팅 수행자(명단)			
농가·업체 참석자(명단)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붙임. 서식 8>

HACCP컨설팅 대상업소 선정 보고

시 군	사업대상자			축종/업소	사육두수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폰/집)			

<붙임. 서식 9>

HACCP컨설팅 계약체결 상황 보고

시군	컨설팅 계약업체명	사업대상자		축종/ 업소	계약 일자	착수일자 (자부담입금일)	비고
		성명	주소				

<붙임. 서식 10>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사업 정산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70**	**560,000**	**224,000**	**50,400**	**117,600**	**168,000**	
청주	3	24,000	9,600	2,160	5,040	7,200	
충주	15	120,000	48,000	10,800	25,200	36,000	
제천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청원	10	80,000	32,000	7,200	16,800	24,000	
보은	10	80,000	32,000	7,200	16,800	24,000	
옥천	3	24,000	9,600	2,160	5,040	7,200	
영동	5	40,000	16,000	3,600	8,400	12,000	
증평	2	16,000	6,400	1,440	3,360	4,800	
진천	10	80,000	32,000	7,200	16,800	24,000	
괴산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음성	2	16,000	6,400	1,440	3,360	4,800	
단양	2	16,000	6,400	1,440	3,360	4,800	

3. 폐사된 소 처리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변정운	행)3733 일)220-37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제도권 밖에서 불법도축된 쇠고기 유통근절로 먹거리 안전성 제고

○ 정상도축이 곤란한 소(牛)의 처리비 지원으로 불법유통 근원 차단 및 농가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안전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량		1,000두	1,000두	1,000두
사업비	합 계	200	200	220
	국 비			
	도 비	60	60	66
	시군비	140	140	154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축산농가

2. 자금의 사용 용도

○ 폐사축 사체처리비(랜더링) 또는 폐사축 이동·매립비용 지원

3.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대상

○ 소 및 쇠고기 위탁관리 기관에 출생 신고되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
예) 일반질병,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5. 사업기간

○ '13. 1 ~12월

6. 지원기준, 용도, 한도액

○ 지원기준 : 7개월 이상 사육된 소

○ 지원한도 : 220천원/두

- 한도 초과시 자부담 또는 시·군비로 충당하여 적의 추진

○ 지원용도 : 랜더링(열처리) 또는 폐사축 이동·매립비용

※ 이동·매립비용 : 축사 안에서 소를 끌어내는 비용 또는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

7. 세부추진요령

○ 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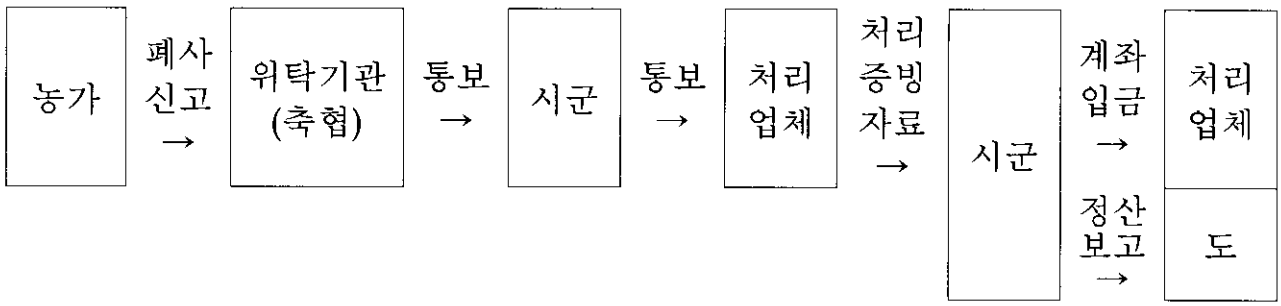
○ 협조기관 : 농협충북지역본부 및 9개 이력제 위탁기관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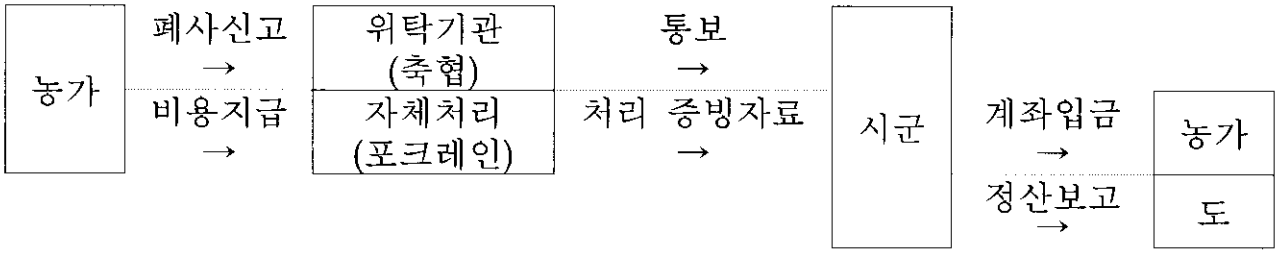
○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랜더링(열처리) 처리할 경우



○ 랜더링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2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시달 및 추진 총괄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농가 홍보
- 신고접수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 1588-4060)
- 처리 증빙자료 확인 및 처리상황 수시 지도·감독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농가

- 폐사 소 발생시 신고
- 자체 처리시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등) 제출

○ 지역축협(위탁처리기관)

- 폐사 소 발생시 신고 접수 및 전산시스템 입력
- 폐사 소 신고 접수시 시군에 통보

○ 랜더링 처리업체

- 폐사 소 열처리 및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3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군비 부담비율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비 부족시 농가 자부담 또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 가능

○ 랜더링업체 및 농가의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하여 자금집행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가능

4 행정사항

○ **추진실적은 매 익월 5일한 보고(서식 1)**

○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 보고(서식 1)**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벌칙규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홍보 강화

○ 폐사 소의 처리는 랜더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랜더링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가급적 자체 매립장내 매립토록 협조

<서식 1>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

<　　시·군>

구분	대상자 (호)	사업량	자 금 집 행(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잔 액						

4. 충북 축산물브랜드전 개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신동앙	행)3732 일)220-3732

1. 목 적

○ 충북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기회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유통업체, 소비자가 함께하는 직거래장 필요

2. 추진방향

○ **도내의 우수 브랜드축산물 홍보 및 소비**

- 전시·시식회, 할인판매, 홍보를 통한 볼거리, 먹거리 및 체험장을 만들어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비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충북지역 우수 브랜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 **브랜드업체의 판로확충**

-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행사참여와 구매를 통하여 참가업체 발전 방안 모색과 매출 증대 추진
- 신규 브랜드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홍보의 장 마련

○ **충북 축산물브랜드전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충북 축산물브랜드전 개최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전향적인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3. 행사개요

○ 명 칭 : 함께하는 충북 축산 페스티벌

○ 기 간 : '13. 5. 3 ~ 5. 5(3일간, '13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 장 소 : KTX오송역 일원(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주 최 : 충청북도

○ 주 관 : 충북농협지역본부

○ 협 조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오리·양봉협회, 소비자단체,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 소요예산 : 40,000천원(도비)

○ 참여대상 : 충북브랜드축산물에 한함(타도 브랜드 제외)

- 품목 : 한·육우·돼지·닭고기·염소, 우유, 계란, 벌꿀, 가공품 등

○ 참여자격

- 특허청 등록브랜드를 소유한 생산자단체
- 도지사 품질인증 획득 경영체
- 도내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이용한 축산물브랜드
-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식육·乳·알가공품

4.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주관기관
시상	한우 고급육 품평회 입상자	충청북도
전시·판매행사	전시, 판매, 시식, 소비·홍보	농협 및 전시업체
	한우고급육 품평회 입상육 사진	
	쇠고기이력제, HACCP제도 홍보	평가원, 기준원
부대행사	브랜드축산물 직거래장터운영	농 협

※ 주요행사 세부추진계획은 추후통보

5. 홍보계획

○ **행사안내 신문·잡지광고**

- 지방 일간지, 축산관련 신문·잡지, 도 전광판, 옥외 광고판 등
- 인터넷을 통한 홍보(충청북도 홈페이지활용)
-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 등 배부

○ **기 타**

- 공보관실을 통하여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전시기간 중 공중파 및 케이블 TV 취재 홍보
- 관련기관 참관 및 홍보협조

5. 전국 축산물페스티벌 참가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신동앙	행)3732 일)220-3732

1. 목 적

○ 고품질의 안전한 충북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

○ 벤치마킹의 장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파워 브랜드 구현

2. 추진방향

○ 전국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 충북 축산물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충북 브랜드 축산물의 브랜드파워 강화 및 판매촉진

○ 충북 브랜드 축산물의 전국단위 홍보로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확대

3. 행사개요

○ 일　　시 : 2013. 8 ~ 10월중

○ 장　　소 : 코엑스(서울 역삼동 소재) 예정

○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　　관 : 농협중앙회

○ 행사내용 : 브랜드 축산물 전시, 판매 및 무료시식 등 홍보

4.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취급하고, 생산·유통기반이 우리도에 소재한 브랜드경영체, 가공업체, 친환경축산물생산법인
- 품목 : 한·육우, 돼지, 닭, 오리, 양봉, 유제품, 육가공품 등
- 자격 : 도지사품질인증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우수축산물브랜드

○ 지원내용

- 소요예산 : 27,000천원(도비)
- 참가업체 독립관 및 지역관 부스설치 등 지원

5.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지역특화 우수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6.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변정운	행)3733 일)220-3733

1. 목 적

○ 부정축산물 유통근절로 소비자 건강 증진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건전한 축산업 발전기여

2. 사업개요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편성 운영

- 시군은 자체실정과 인력을 감안하여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점검시기

- 특별점검 : 육류성수기(설날, 추석, 하절기 등)
- 수시점검 : 식육유통질서 확립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 주요 점검사항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여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준수 여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원산지 표시 등)
-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감시
  - 유통·판매단계의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여부
  - 검사증명서(수입식육은 신고필증),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원산지 구분 판매의 적정성 여부
- 국제행사 납품업체 감시 강화

※ '13년 중점감시 : 축산물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 적정 표시 여부

3. 사업시행요령 : 2013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4. 행정사항

○ 무허가·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하여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제품이 타 시·도 허가품목인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축산물가공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가공실 실내온도가 15℃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 축산물가공업 허가 여부	
	○ 품목제조보고(변경) 여부	
	○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 여부	
	○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매월 1회) 실시·보관(2년)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검역검사본부 고시 참조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13.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내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보관(2년)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여부 - 보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효기간·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상)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축산물판매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 포장	◦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로 포장 여부	
	◦ 최소포장단위에 생산농장과 산란일이 같은 계란포장 여부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최소포장단위 표시사항>**	
	◦ 유통기한 표시여부	
	◦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 판매자명 및 소재지 표시여부	
	◦ 제품명 표시여부	
	◦ 내용량(개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표시) 표시여부	
	◦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 표시여부	
	◦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여부	
	<난각(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 또는 생산자명 기호표시(해당하는 경우)방법 준수 여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HACCP 미지정 업체의 HACCP 마크 사용 등	
	◦ 계란 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와 대조하여 등급표시 일치 여부	
	◦ 법 32조 관련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기타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부패란 등 비정상적인 란의 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식용란 거래내역서 작성·보관(6개월 이상)여부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7.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건립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위생	김정태	행)3731 일)220-37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낙농 경영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잉여 원유를 이용한 친환경 치즈를 생산하여 낙농가 수익 증대 도모

- 중기적으로 "충북 신선치즈 브랜드" 개발로 지역발전 및 특화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고품질 치즈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전시관 및 낙농 현장체험을 통하여 치즈 및 유제품 홍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선치즈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수입치즈의 경쟁력 강화

○ 2013년 준공 완료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사업계획에 따른 준공	-	낙농치즈공장 완료	2012.1.	▪ 사업계획에 따른 준공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사업	
년 도 별		2012	2013
사 업 비	합 계	1,700	1,200
	국비(광특)	850	600
	도 비	510	360
	자부담	340	24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부지구입 : 자담

○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 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 시설투자 : 원유시설, 살균시설, CIP자동화, 배관·전기공사, 커드 제조시설, 치즈 냉각시설, 충진시설 등

○ 부대시설 : 충진포장, 보관, 공조, 장비 등

○ 제품 검사장비 및 시설 : 미생물·이화학 검사장비 등

○ 폐수 및 소독시설 등

3. 지원비율

○ 광특 50%, 도비 30%, 자담 20%

4.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2개사업

○ 사업비 : 2,900백만원(광특 1,450, 도비 870, 자담 580)

- **2013년 : 1,200백만원(광특 600, 도비 360, 자담 240)**
- 2012년 : 1,700백만원(광특 850, 도비 510, 자담 240)

5.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시달 (도→충북낙협) ⇒ 사업계획서 제출 (충북낙협→도) ⇒ 사업계획서 검토 (도) ⇒ 공장건립 (충북낙협) ⇒

추진실적 보고 (충북낙협→도) ⇒ 보조금 교부신청 (충북낙협→도) ⇒ 보조금 교부 (도→충북낙협) ⇒ 사업완료·정산보고 (충북낙협→도)

○ **세부요령**

- 기본계획 수립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서는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건립 세부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한 이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요령

· 세부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 **자금집행 및 정산**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조례에 의거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실시

○ **사후관리 : 충청북도**

-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건립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

6. 행정사항

○ 사업추진 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조치

○ 사업계획서 제출 : 2013. 2.28일까지(별첨 서식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서약서 제출 : 2013.12.20일까지(별첨 서식2)

○ 사업완료·정산보고 : 2013. 12. 31일까지(별첨 서식3)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량 :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광특	도비	자담	비고
계	2,900,000	1,450,000	870,000	580,000	
2012년도	1,200,000	600,000	360,000	240,000	
2013년도	1,700,000	850,000	510,000	340,000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기간 : 2012~2013년(2개년)

○ 사업내용 :

○ 주 관 :

○ 세부 사업내용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 보조를 받고자하는 금액 :

○ 산출기초

-

4. 보조사업의 효과

○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자의 명 칭 :

주 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가.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합 계	재 원 별 내 역				비 고
	국 비	도 비	자 담		

나.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합 계	재원별내역		비 고
	국 비	도 비	

4. 보조사업기간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청구서 1부

3. 서약서 1부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인)

청 구 서

일 금 : ○○○원정(₩0,000,000)

상기금액을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건립 사업 지원 보조금(민간자본이전)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3. . .

청 구 자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보조사업명 :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면 다음 각 호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겠음

2. 보조사업에 대한 법령조례와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킬 것은 물론 법규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 없이 수행하겠음

3. 보조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과 자담분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고 사업기간 종료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는 등 선량한 의무를 다 하겠음

2013. .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소 재 지 :

○ 사업예산 :

○ 건축면적 :

□ 자금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계 획				실 적				잔 액			
	계	광특	도비	자담	계	광특	도비	자담	계	광특	도비	자담
계												
○ ○ ○ ○ ○												